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2. 1.



목 차

I. 총칙	3
1. 목적및추진근거.....	3
2. 운영주체별역할및업무.....	3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5
4. 사업운영.....	5
5. 지침시행일.....	5
6. 사업추진체계.....	6
II. 지원 대상	7
1. 지원대상.....	7
2. 지원제외.....	11
III. 지원 요건	14
1. 지원대상청년.....	14
2. 지원제외청년.....	19
3. 채용요건.....	21
IV. 지원 내용	26
1. 지원기간.....	26
2. 지원한도.....	26
3. 지원수준.....	28
V. 지원 절차	29
1. 기업의사업참여신청·승인.....	29
2. 청년채용.....	30
3. 지원금신청및지급.....	32
[별첨]	36

I

총칙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도약장려금사업전반에관한총괄·조정및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 안내 및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사항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 고용
- 장려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약정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목적) 고용센터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11] 참조

4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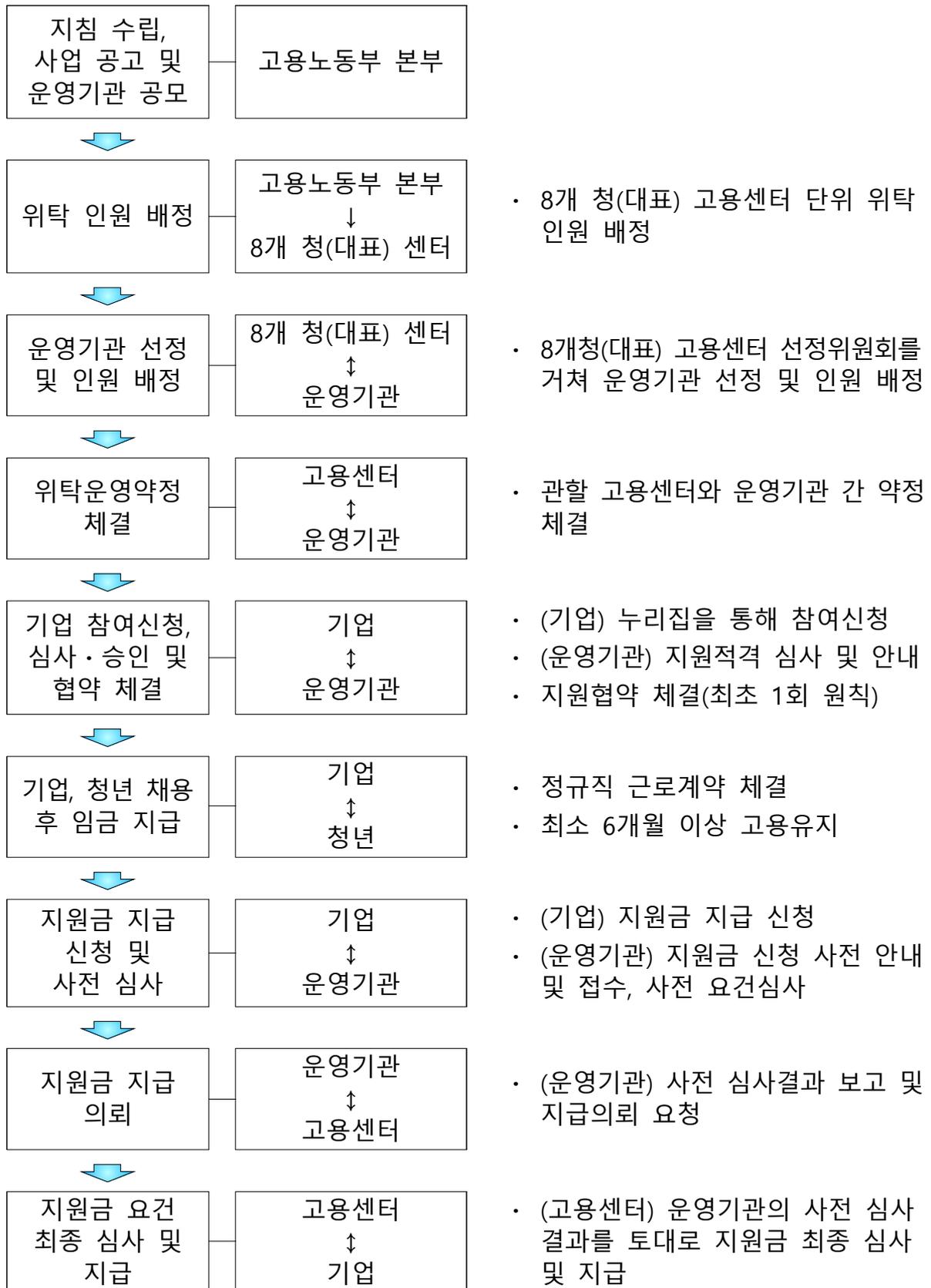
- '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2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2.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2.1.1.~'22.12.31.에 지원대상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6

사업 추진 체계



II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1-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①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 ② '21.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10월부터 '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 ③ '22.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2.2월부터 '22.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 ④ '22.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2.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2.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2.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 명단 제출, 장려금 지급 등의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됨(당해 연도 사업에 한함, 아래 1-2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① '21.3월부터 '22.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2.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② '21.3월부터 '22.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2.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2.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2.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인위적 감원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임
- ③ '21.9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21.9월부터 '22.2월까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7명인 기업이 '22.3월에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4명)을 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 ① 성장유망업종 ⇨ [별첨1]
 - * [별첨1]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②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 ③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 ④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①청년(만 15~39세)이 창업 & ②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만 15~39세) & ③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⑥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⑦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19.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⑧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 고용위기지역 현황('22.1.1. 기준)은 [별첨7]

*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지사·지점 등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⑨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22.1.1. 기준)은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1-3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시

- ①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 채용 시점이 '22.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 ② 수도권에 소재한, '21.1월부터 '21.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2.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2.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2.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4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합리적인 경우 판단기준

-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 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2

지원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 단란주점, 유희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④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⑥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9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②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③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10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Ⅲ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원칙 또는 특례 ①~⑦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됨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1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2.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2.8.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음

확인 방법

- √ 고용센터는 바로윈,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2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①~⑦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임을 증빙하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되는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별첨10] 참조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보호종료 확인서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청년과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

- 위 ⑦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①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22년 사업 초에는 "도약장려금" 신청 기업의 모든 구인공고가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업의 구인공고가 모두 '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으로 연동되어 게재됨

- '22년 2분기경에는(정확한 시점은 추후 공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이후의 구인공고만 전용 채용관에 게재될 예정

* 구인공고 제목에 "도약장려금"이 명시된 구인공고만 '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으로 연동되어 게재됨

-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취업희망풀」 상의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②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2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2-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4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5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가능

2-7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채용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5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월 8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

*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8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9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II-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1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2.1.1.~'22.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 중인 청년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적용함
 - * 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 이 경우에도 '22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지원대상에 포함
- '22.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22.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 이 경우에도 '22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지원대상에 포함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1.1.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3-4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초과 시 지원 제외



3-5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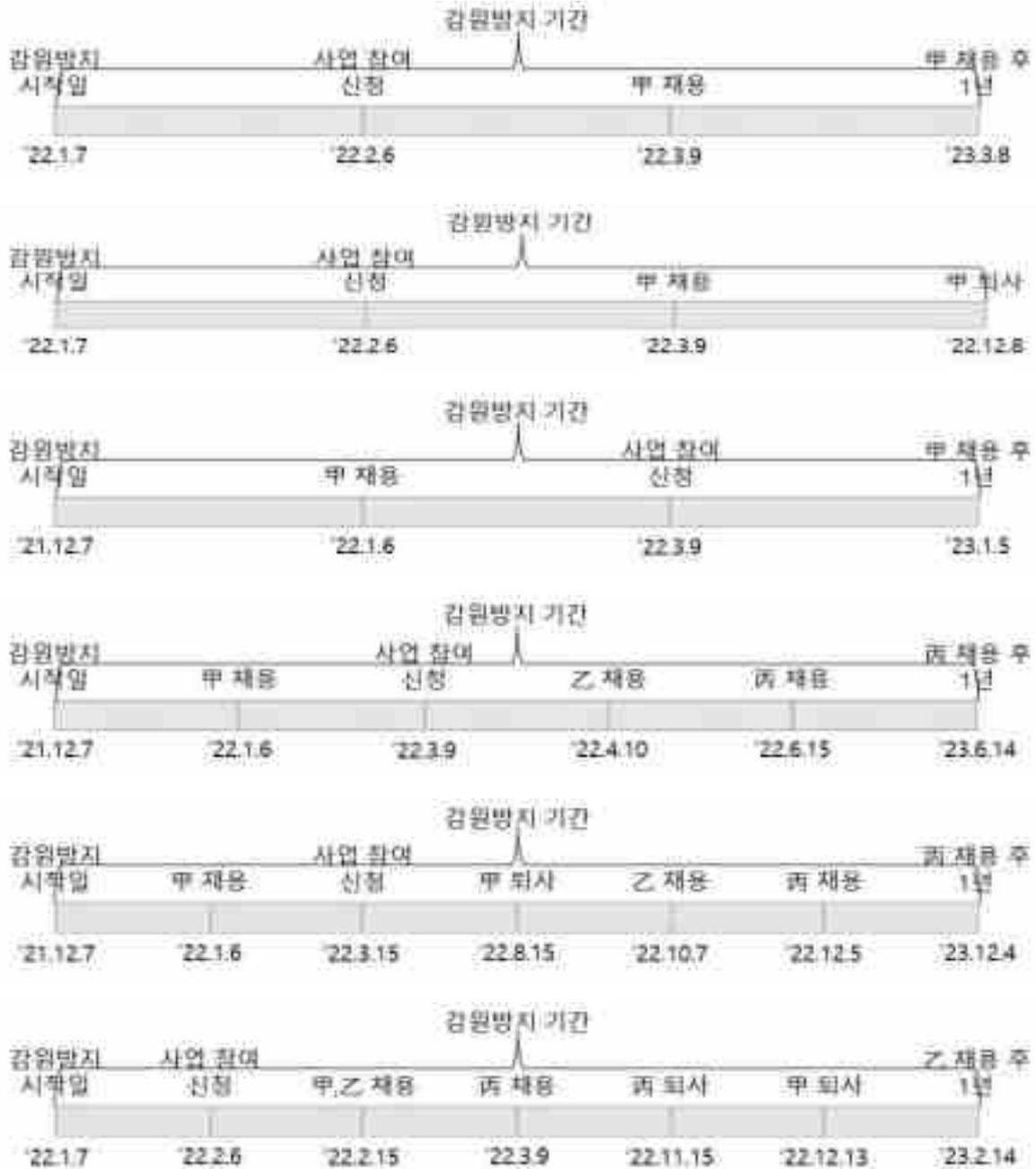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 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감원방지 기간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의 채용일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채용 시점과 관계 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방지 기간 예시



* 위 퇴사는 모두 "자진 퇴사"를 의미함

- 감원 방지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고용조정 발생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고용조정 발생 이후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 재참여 제한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가 제한됨

* 재참여 제한 기간은 '23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시에도 연동하여 적용됨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도약장려금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함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제한 예시

- ① 기업의 지원 한도가 20명이고 기업이 10명을 채용하여 지원받던 중, 3명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 ☞ 고용조정이 발생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고용조정이 최초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전면 지급 중단
- ② '22.2.7.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22.3.16에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 ☞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업은 '22.9.16.부터 재참여 가능

IV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채용일은 '22.1.1.~'22.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 \times 0.5 = 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기업별 지원 한도 예시

- ①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21.1월부터 '21.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 기업이 '22.1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 ☞ 12.6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13명 → $13 \times 0.5 = 6.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7명
- ② '22.1월에 충청북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5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2.1월~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인 경우
 - ☞ 34.2를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35명 → $35 \times 1 = 35$ → 최대 30명 지원 한도가 적용되어 지원 한도 30명
- ③ '21.7월에 전라남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4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1.7월~'22.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2명인 경우(성장유망업종에 해당)
 - ☞ 3.2명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4명 → $4 \times 1 = 4$ → 지원 한도 4명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3-4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예시

- √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차부터 1년 이상 정상근무했을 경우 ☞ 총 지원기간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도약장려금을 지원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 승인

1-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부정수급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 신청 기업에게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청년 채용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p.16 참조)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수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7),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제출) 등 지원금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6)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7)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지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함
- (지급 제한)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 고용조정 발생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고용조정 발생 이후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 p.20, "3-5.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부분 참조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18, "2-7.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부분 참조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2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집중점검기간 운영 지침」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3 참여기업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있음



별 첨

별첨 목록

- 【별첨1】 성장유망업종.....38
- 【별첨2】 지식서비스산업관련업종.....49
- 【별첨3】 문화콘텐츠산업관련업종.....50
- 【별첨4】 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업종.....51
- 【별첨5】 미래유망기업인정사업및대상기업확인방법.....53
- 【별첨6】 지역별주력육성산업.....57
- 【별첨7】 특별고용지원업종현황('22.1.1.현재).....60
- 【별첨8】 지원제외업종(소비·향락업등업종).....65
- 【별첨9】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관련취업지원프로그램.....68

별첨 1

성장유망업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2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3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4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5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6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7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8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9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10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11	05100	석탄 광업
12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3	06200	비철금속 광업
14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6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7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8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9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0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1	11202	생수 생산업
22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23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4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2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6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7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8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9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30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31	17110	펄프 제조업
32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33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4	18119	기타 인쇄업
35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36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7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8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3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40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41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42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43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44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45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6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47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48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49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50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51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52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53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54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55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56	20423	화장품 제조업
57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58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59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60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61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62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63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64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65	21220	한의원약품 제조업
66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67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8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69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70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71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72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3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4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76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7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78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79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80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1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82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83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84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85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6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87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8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89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0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92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3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94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95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96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97	23992	연마재 제조업
98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99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0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101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2	24112	제강업
103	24113	합금철 제조업
104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05	24132	강관 제조업
106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연결구류 제조업
107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108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09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0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1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3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4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15	24312	강주물 주조업
116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117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18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19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0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121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122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123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24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5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126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7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8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29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130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31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32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33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4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5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36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137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38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39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40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41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2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3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44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145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146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47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48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49	26310	컴퓨터 제조업
150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151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52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53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154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5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56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157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58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59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60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61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62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63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64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65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66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67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68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69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0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1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72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73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74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75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76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177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78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79	28112	변압기 제조업
180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81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82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183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84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185	28202	축전지 제조업
186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87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88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89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90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91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92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93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194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95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96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197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98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199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0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01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02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03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4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5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06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07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08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09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10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11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12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13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14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15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6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17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18	29221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19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20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21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22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23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24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25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6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7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28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29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30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31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32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33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34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235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36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37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238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39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40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41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42	31111	강선 건조업
243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244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45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46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47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248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49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50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1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52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53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254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55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56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257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58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59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60	35111	원자력 발전업
261	35112	수력 발전업
262	35113	화력 발전업
263	35114	태양력 발전업
264	35119	기타 발전업
265	35120	송전 및 배전업
266	35130	전기 판매업
267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68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9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270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1	37011	하수 처리업
272	37012	폐수 처리업
273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274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275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6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7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278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79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80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281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282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83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84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85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286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87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288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89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290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291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292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293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294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295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96	46106	기계 및 장비 중개업
297	46109	상품 종합중개업
298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299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300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301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302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303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304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305	47111	백화점
306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07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308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309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310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311	49401	택배업
312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313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314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315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316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317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18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319	52101	일반 창고업
320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321	52103	농산물 창고업
322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323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24	58112	만화 출판업
325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326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7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8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9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0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1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2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3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4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35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36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37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338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339	60100	라디오 방송업
340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41	60222	유선방송업
342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43	61210	유선통신업
344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345	61291	통신 재판매업
346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347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48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349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350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351	63111	자료 처리업
352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53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54	63910	뉴스 제공업
355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356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357	64121	국내은행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58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359	64912	개발금융기관
360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61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362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363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364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365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366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367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368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369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370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371	71310	광고 대행업
372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373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374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375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76	71531	경영컨설팅업
377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378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79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0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1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2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383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384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385	72924	지도제작업
386	73202	제품 디자인업
387	73203	시각 디자인업
388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389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90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391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92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93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94	75994	포장 및 충전업
395	76110	자동차 임대업
396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397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98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399	76291	서적 임대업
400	76292	의류 임대업
401	762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402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403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04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405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406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407	84213	환경 행정
408	84405	소방서
409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410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411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412	85709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413	86101	종합병원
414	86102	일반병원
415	86103	치과병원
416	86104	한방병원
417	86105	요양병원
418	86201	일반의원
419	86202	치과의원
420	86203	한의원
421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422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423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424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425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426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427	90191	공연 기획업
428	90192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429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430	95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61	병원
862	의원
869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별첨 5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비고
과기부	우수기업연구소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인증서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id=33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http://www.gomentoring.or.kr/	3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K-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십 서비스 협약서	www.born2global.com	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사업 최종선정 통보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id=x=3	1년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서	www.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팁스(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smtech.go.kr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www.k-unicorn.or.kr	1년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비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3년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인증서	www.atac.or.kr	4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지원기간에 준하여 인정기간 설정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증	www.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인증서	https://styletech.kid p.or.kr/	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표창장	www.keit.re.kr	5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www.wcp.or.kr	3년	유효 기간 연장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인증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수부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tech.kimst.re.kr	5년	
	예비오션 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3년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서	https://celc.koti.re.kr/	3년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http://keiti.re.kr (주요사업>환경기술 개발>기후탄소기술 개발>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년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과기부	우수기업연구소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인증서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http://www.gomentoring.or.kr/	3년
	K-ICT 해외진출지원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십 서비스 협약서	www.born2global.com	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사업 최종선정 통보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idx=3	1년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서	www.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팁스(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smtech.go.kr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www.k-unicorn.or.kr	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3년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인증서	www.atac.or.kr	4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증	www.kidp.or.kr	3년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인증서	https://styletech.kidp. or.kr/	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표창장	www.keit.re.kr	5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www.wcp.or.kr	3년
	월드클래스300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인증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수부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tech.kimst.re.kr	5년
	예비오션 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3년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인증	인증서	https://celc.koti.re.kr	3년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http://keiti.re.kr (주요사업>환경기술 개발>기후탄소기술 개발>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년

별첨 6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대전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차세대 무선통신 융합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업	61220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지능형 로봇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액정 시장치 제조업	2621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바이오 메디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1300
	화장품 제조업	20423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한약약품 제조업	21220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 충청북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지능형 IT부품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바이오 헬스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한의원약품 제조업		2122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32
화장품 제조업		20423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차류 가공업	10792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1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물질 제조업		2011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수송기계 소재부품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9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2
	축전지 제조업	28202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1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3033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30392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2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 충청남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친환경 모빌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축전지 제조업	28202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5
스마트 휴먼 바이오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화장품 제조업	2042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별첨 8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22.1.1. 현재)

-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업종		기간											
조선업	<p>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p> <table border="1" data-bbox="368 689 1185 1104">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td> <td rowspan="6">C311 선박 건조업</td> <td>C3111 일반 건조업</td> </tr> <tr> <td>C3112 항공수송선 건조업</td> </tr> <tr> <td>C3113 비항공용 선박 및 기타 운재용 선박 건조업</td> </tr> <tr> <td>C3114 선박 구성부품용 건조업</td> </tr> <tr> <td>C3115 기타 선박 건조업</td> </tr> <tr> <td>C3119 선박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선박 건조업	C3111 일반 건조업	C3112 항공수송선 건조업	C3113 비항공용 선박 및 기타 운재용 선박 건조업	C3114 선박 구성부품용 건조업	C3115 기타 선박 건조업	C3119 선박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16.7.1. ~'22.12.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선박 건조업	C3111 일반 건조업											
		C3112 항공수송선 건조업											
		C3113 비항공용 선박 및 기타 운재용 선박 건조업											
		C3114 선박 구성부품용 건조업											
		C3115 기타 선박 건조업											
		C3119 선박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여행업	<p>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p> <table border="1" data-bbox="368 1272 1185 1469">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td> <td>7521 여행사업</td> <td>75210 여행사업</td> </tr> <tr> <td>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td> <td>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td> </tr> </tbody> </table> <p>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p>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p> <table border="1" data-bbox="368 1720 1185 1917">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5511 호텔 및 숙박 숙박시설 운영업</td> <td rowspan="2">5510 호텔 및 숙박 숙박시설 운영업</td> <td>55101 호텔업</td> </tr> <tr> <td>55103 휴양콘도 운영업</td> </tr> </tbody> </table> <p>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511 호텔 및 숙박 숙박시설 운영업	5510 호텔 및 숙박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511 호텔 및 숙박 숙박시설 운영업	5510 호텔 및 숙박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업종		기간																		
관광운송업	<p>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p> <table border="1" data-bbox="368 456 1187 976">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49232 육상 여객 운송업</td> <td>49232 부항외 육상 여객 운송업</td> <td>492323 전세버스 운송업</td> </tr> <tr> <td rowspan="2">5011 해상 운송업</td> <td>5011 외항 운송업</td> <td>50111 외항 여객 운송업</td> </tr> <tr> <td>5012 내항 운송업</td> <td>50121 내항 여객 운송업</td> </tr> <tr> <td rowspan="2">502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td> <td rowspan="2">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td> <td>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td> </tr> <tr> <td>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td> </tr> <tr> <td>5110 항공 여객 운송업</td> <td>5110 항공 여객 운송업</td> <td>51100 항공 여객 운송업</td> </tr> </tbody> </table> <p>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p> <p>3)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3조제1~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p> <p>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p> <p>5)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923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2 부항외 육상 여객 운송업	492323 전세버스 운송업	501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923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2 부항외 육상 여객 운송업	492323 전세버스 운송업																		
501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p>라.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p> <table border="1" data-bbox="368 1592 1187 2018">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td> <td rowspan="3">9011 공연시설 운영업</td> <td>90110 공연시설 운영업</td> </tr> <tr> <td rowspan="3">9012 공연단체</td> <td>90121 연극단체</td> </tr> <tr> <td>90122 무용 및 율곡단체</td> </tr> <tr> <td>90123 기타 공연단체</td> </tr> <tr> <td rowspan="2">9013 각종 예술가</td> <td>90131 공연 예술가</td> </tr> <tr> <td>90132 비공연 예술가</td> </tr> <tr> <td rowspan="4">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td> <td>90191 공연 기획업</td> </tr> <tr> <td>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회의업</td> </tr> <tr> <td>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율곡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각종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회의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0.3.16.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율곡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각종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회의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업종		기간													
	2)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영화업	<p>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59130), 영화관 운영업(59141)</p> <table border="1" data-bbox="368 663 1187 1133">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td> <td rowspan="3">59111 일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td> <td>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td> </tr> <tr> <td>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td> </tr> <tr> <td>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td> </tr> <tr> <td rowspan="2">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td> <td>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td> </tr> <tr> <td>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td> </tr> <tr> <td>59141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td> <td>59141 영화관 운영업</td> </tr> </tbody> </table>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수리한 업체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1 일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1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21.4.1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1 일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1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수련시설	<p>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5614)</p> <table border="1" data-bbox="368 1485 1187 1603">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85614 기타 교육기관</td> <td>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td> <td>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td> </tr> </tbody> </table> <p>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5614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21.4.1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5614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유원시설	<p>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p> <table border="1" data-bbox="368 1872 1187 2018">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9121 유원지 및 기타 오락업 관련 서비스업</td> <td>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td> <td>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121 유원지 및 기타 오락업 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1.4.1 ~'22.3.3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121 유원지 및 기타 오락업 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업종		기간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 수리한 업체							
외국인전용 카지노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21.4.1 ~'22.3.31						
항공기부품 제조업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31322)	'21.4.1 ~'22.3.31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td> <td>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td> <td>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준공영제 제외)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가~라)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 다만, 공영제 및 준공영제는 제외한다.	'21.4.1 ~'22.3.31						
항공기 취급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5293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td> <td>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td> <td>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293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293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2)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	'20.4.27. ~'22.3.31.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분류</th> <th>세분류</th> <th>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4713 종합 소매업</td> <td>4713 면세점</td> <td>47130 면세점</td> </tr> </tbody> </table>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713 종합 소매업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713 종합 소매업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2)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3) 전체 매출액 중 위 2)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및 제4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업체							

업종		기간						
전시·국제회의업	<p>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p> <table border="1" data-bbox="368 365 1187 535"> <thead> <tr> <th data-bbox="368 365 639 421">소분류</th> <th data-bbox="639 365 911 421">세분류</th> <th data-bbox="911 365 1187 421">세세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8 421 639 535">7599-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td> <td data-bbox="639 421 911 535">7599-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td> <td data-bbox="911 421 1187 535">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td> </tr> </tbody> </table> <p>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p> <p>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p>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599-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599-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항버스	<p>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p>							

별첨 9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p>청소년 유해업소</p>	<p>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p> <p>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p>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p>

구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 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구분	내용
	<p>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p> <p>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p> <p>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营业을 말한다.</p> <p>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营业을 말한다.</p> <p>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구를 말한다.</p> <p>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p>

별첨 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

* 아래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이어야 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 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 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p>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